

# 자산운용규정 (2010. 11. 25 규정 제345호)

2011.11.30 개 정 제359호  
2013.11.29 개 정 제372호  
2014. 3.24 개 정 제379호  
2014.12.31 개 정 제393호  
2016. 5. 4 개 정 제410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하 “공제회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제정의 건전성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자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공제회법,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적 자산배분”이라 함은 공제회 투자정책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자산배분을 말한다.
2. “전술적 자산배분”이라 함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해 결정된 자산배분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단기적인 자산배분을 말한다.
3. “정보자산”이라 함은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공제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공제회의 손익 또는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위험관리”라 함은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채권 발행기업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6. “듀레이션(Duration)”이라 함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말한다.
7. “대체투자”라 함은 상장주식, 채권, 예금 등 정형화된 금융상품과 대비되는 비정형적 투자를 말한다.
8. “기업인수합병(M&A)”이라 함은 특정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당해 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동산 개발”이라 함은 민법 제99조의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행위 또는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10. “위탁운용”이라 함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금리, 주가지수, 환율 등과 관련한 기초자산의 가격, 지표 및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한다.(13.11.29 개정)

12. “파생상품”이라 함은 시장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자산 또는 증권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을 말한다.
13. “단기자금”이라 함은 회원급여금 지급 준비자금과 자산운용의 시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자금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령, 관련 제규정, 통상적인 사용례의 순에 따른다.

제 4 조(자산운용 원칙)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자산은 각 투자유형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제 5 조(윤리의무) ①임직원은 자산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 부담금의 수탁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자산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청렴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정보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②사업담당 임원 및 주식 직접운용부서, 주식 일임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 파생상품, 주식관련 채권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부서 근무 전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취득은 예외로 한다.
- ③사업담당 임원이 임기를 시작하거나 직원이 주식 직접운용부서 및 주식 일임운용부서에 근무하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영업일 이내에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선물, 옵션을 매도하여야 한다.

제 6 조(업무수행 및 면책) ①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산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 2 장 위 원 회

제 7 조(운영위원회) 공제회법 제11조 및 정관 제16조의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자산배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자산운용위원회) ①공제회 자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자산운용위원회는 관리이사, 사업이사, 기획조정실장, 리스크관리실장,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구성한다.

(16.5.4 개정)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이사가 되며,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16.5.4 개정)

④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술적 자산배분
  2. 월별 자금배분 및 재원조달
  3. 기타 자산운용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⑤자산운용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투자심의위원회) ①투자자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6.5.4

개정)

②투자심의위원회는 관리이사, 사업이사, 사업이사가 지명하는 3인의 직원과 4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13.11.29, 14.12.31, 16.5.4 개정)

③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이사가 되며,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16.5.4 개정)

④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의 투자. 다만 외부공모를 통해 내·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한 국내·외 간접투자와 국내·외에 개설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에 대한 간접투자는 제외한다. (11.11.30, 13.11.29, 14.3.24 개정)

2. 제18조에 대한 투자 중 파생상품 투자(헤지거래는 제외한다)

3. 기타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투자위원회는 소집사유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자산운용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16.5.4 개정)

②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사항은 이를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 3 장 자산배분

제11조(전략적 자산배분) ①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향후 자금수지,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자산으로 배분하여 운용한다. (11.11.30, 13.11.29 전문개정)

1. 주식 : 국내외 주식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국내외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간접투자상품 등에 대한 위탁운용투자

2. 채권 : 국내외 채권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기업대출채권에 대한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확정금리형·원금보장형 상품 등에 대한 투자

3.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

4. 대체투자 : 국내외 사모투자, 투자조합, 재화투자(Commodity), 부동산 직·간접투자, 부동산 등 실물 등에 대한 투자

5. 회원대여 : 생활안정자금 등 회원 대여금 운용

6. 단기자금 : 단기 금융투자신탁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자금을 대한 투자

7. 기타자산 : 출판, 회관임대 등 기타 수익사업 및 운영자산

②전략적 자산배분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고 재정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

제12조(자산운용계획) ①공제회는 제11조의 자산배분 목표 및 시장전망과 자금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자산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술적 자산배분) 공제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자 산 운 용

제14조(주식 직접운용) 주식 직접운용은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회사의 재무상태, 보유주식의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운용한다.

제15조(채권직접운용) ①채권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채권 종류별, 발행자별, 만기구조별 등으로 분산하여 투자한다.

②채권 투자시에는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금리차 및 유동성 확보 등을 고려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절하여 투자한다.

(13.11.29 본조 제목 개정)

제16조(대체투자) ①대체투자는 투자자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②대체투자를 위하여 법률, 재무 및 기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12.31 개정)

제17조(위탁운용)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자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 금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최소화 또는 수익 확보를 위하여 운용한다.(13.11.29 개정)

제19조(단기자금) 단기자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한다.

제20조(회원복지사업) 회원복지사업은 투자에 따르는 수익·위험과 함께 회원복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한다.

제21조(유가증권 보관 및 대여) ①유가증권은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의 취득·대여·처분에 따른 출납 및 관리업무는 소관 부서장이 담당한다.

③자산운용의 효율 제고 및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자산운용과 관련한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사고방지) ①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유 유가증권이 변조·분실 등 사고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매입처에 변제를 요청하고 투자원리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재원조달

제24조(자산운용 성과평가) ①성과평가는 실현된 투자의 성과를 목표와 비교·평가분석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자산운용 성과는 자산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평가하며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률은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5조(외부 재원조달)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로부터 퇴직급여를 미만의 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급여를 이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수익원 다각화 및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2. 회원 급여금 지급 제한 부족

3. 기타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②외부조달비용은 조달 약정시의 표면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2010.11.25. 규정 제3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사업개발규정 제14조”를 “자산운용규정 제16조”로 한다.

②부동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업개발규정 제14조를”을 “자산운용규정을”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규정」, 종전의 「사업개발규정」,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규정」, 종전의 「사업개발규정」,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에 따라 이뤄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본다.

부 칙 (2011. 11. 30 규정 제359호)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9 규정 제372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4 규정 제379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규정 제393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4 규정 제410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